

의안번호	제 11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이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공익수당 지급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9조)
-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 및 기준을 변경 등(안 제11조)

## 3. 의안전문 : 불 입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 6. 비용추계서 : 불 입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과”를 “농어업과”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농촌”을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촌”으로, “농업인에게”를 “농어업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3조제1항 중 “농업의”를 “농어업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인의 참여)”를 “(농어업인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 중 “농업”을 각각 “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업의”를 “농어업의”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경영체”를 각각 “농어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호 중 “농업에”를 “농어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중 “농업인”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업</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u>농업</u>을 말한다.</p> <p>2. “<u>농업인</u>”이란 <u>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u>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농어업과</u> ----- ----- ----- <u>농어업인</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u>농어업</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1호에 따른 <u>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u>을 말한다.</p> <p>2. “<u>농어업인</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u>농업인</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임업인</u></p>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4.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4.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촌-----  
-- 농업인에게 -----  
-----.
- 5.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농어업의 ----- 농어업인-----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  
----- 농어업인 -----  
-----  
-----.

② ----- 농어업인 -----

----- 농어업인 -----  
-----  
-----  
-----  
-----.

제4조(농어업인의 참여) 농어업인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농어업인 -----  
-----  
----- 농어업인 -----  
-----  
-----.

② -----

1. 농어업인 -----

2.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략)

5.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

가.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농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 ⑤ (생략)

제8조(지급대상) ①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

2. ----- 농어업인 -----  
-----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농어업 -----  
-----

6. -----  
-----

가. 농어업 -----  
-----  
-----  
-----

나. 농어업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대상) ① 농어업인의 -----  
-----  
-----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

② ----- 농어업인 -----  
-----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생략)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2. (생략)

④ (생략)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  
-----

-----  
-----농어업경영체-----  
-----.

1. (현행과 같음)
2. -----  
-----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에 -----  
-----

③ 농어업인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 ----- 60만원-----.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  
-----.

③ 농어업인 -----  
-----  
-----.

다만,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
2. 신청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3. 신청 전(前) 5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농어업인 -----  
-----  
-----  
-----.

제11조(지급제외) -----  
농어업인-----  
--.

1.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가
2. -----  
-----  
----- 농어업인
3. -----  
-----

는 농업인

4. 신청 전(前) 5년내 농지·산지  
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5.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  
농인

6.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8.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  
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제12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  
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  
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  
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  
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

-- 농어업인

4. -----  
-----

----- 농어업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  
한) -----

농어업인 -----

-----

----- 농

어업인 -----

-----.

## 관련법령 발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 마. (생략)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2. 비용 발생 요인

-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액(조례안 제9조)
-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제외(조례안 제11조)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조례안 제11조(지급제외)

##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액 인상 소요예산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224억원(도비 90, 시군비 134)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불입

##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민영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세 입						
세 출	2,400	564	588	612	636	
기존 사업비	2,176	544	544	544	544	
추가 사업비	224	20	44	68	92	
<b>재원 조달</b>	<b>2,400</b>	<b>564</b>	<b>588</b>	<b>612</b>	<b>636</b>	
도비	소 계	962	226	236	245	255
	기존 사업비	872	218	218	218	218
	추가 사업비	90	8	18	27	37
시군비	소 계	1,438	338	352	367	381
	기존 사업비	1,304	326	326	326	326
	추가 사업비	134	12	26	41	5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